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혁만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무단방치 문제와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여사업자의 안전장구 비치 및 이용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·보관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·보관 비용을 별표로 정함
(안 제6조제3항 및 별표)
-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인명보호 장구 비치 및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를 신설함(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8월 2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정책지원팀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56
 - 전자메일 : csm0101@korea.kr

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「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(안전모 등) 비치
7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자격 등 면허 확인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소요비용 산정기준(제6조제3항 관련)

1. 견인료: 2만원
2. 보관료: 30분당 700원(단,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.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주차위반 금지 등) ①·② (생략)	제6조(주차위반 금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하는 경우에는 「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	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하는 경우에는 <u>별표에 따른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「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대여사업자 준수사항)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7조(대여사업자 준수사항) ① 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<u>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치(안전모 등) 비치</u>
<u><신 설></u>	7. <u>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자격 등 면허 확인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[별표] <u>소요비용 산정기준(제6조제3항 관련)</u> 1. <u>견인료: 2만원</u> 2. <u>보관료: 30분당 700원(단,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.)</u>